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12.6.)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종 설]

목 차

1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4	거창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8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55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3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6. 11. 21.

나. 발 의 자: 강철우 의원 대표발의(표주숙, 변상원, 이성복, 박희순의원)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 마련 및 추진, 관계법령의 책무 성실 이행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라. 복지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마.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6조)

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시행을 명시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1. 25. ~ 1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2015.11.21 시행함과
- 나. 장애인보호법에서 총괄적으로 지원 계획 되었던 사항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군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면 기관명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읍·면 기관명 변경함(안 별표)
 - 거창읍사무소 ⇒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 위천면사무소 ⇒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 가조면사무소 ⇒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02. ~ 11.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현황

○ 개정완료(4곳):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남해군

○ 개정 중(3곳) :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 기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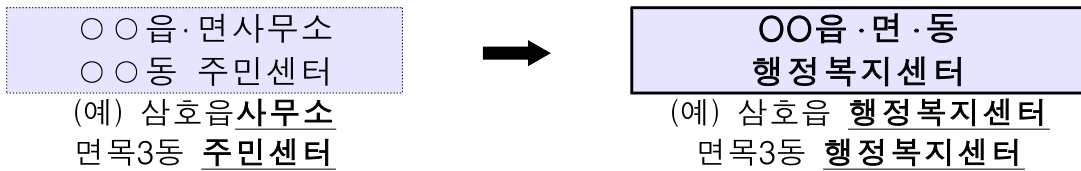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2016.1.22.>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

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로 변경

- (목 적)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
- (명 칭) 기존에 사용하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변경
 ※ 영어명칭은 “Community Service Center”로 사용



- (변경사항)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현판 및 각종 안내판 정비 등 필요
 - 단, 기관장의 직위명은 종전대로 유지(읍·면·동장)되므로, 직인·관인 및 공문서 발신 명의는 변동없음

② 대상 및 시행시기

- (대 상) 복지허브화 시행 읍면동(기본형 + 권역형 內 모든 읍면동)
- (시행시기) ‘16년 상반기부터 자치단체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추진
 * 30개 선도지자체, 52개 읍면동(~‘16.5월) → 800여개 읍면동(~‘16년말) → 全 읍면동(~‘18년말)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5.4.02.)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정비함

- (현행) 총칙- 투자유치 지원체제 -외국인투자의 지원 - 국내기업 투자지원 - 보칙

(변경) 총칙- 투자유치 지원체제- 국내기업 투자지원 - 외국인투자의 지원 -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보칙

-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2015.4.02.)에 맞춰 조문 체계 정비 : 이 조례의 주 적용대상인 국내기업 투자지원 내용을 외국인투자의 지원 보다 앞에 기술하여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투자유치위원회 정비(안 제3조)

- 위원장 변경: 공동위원장 ⇒ 군수

- 다.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신설(안 제12조)
- 라. 산업용 부지 매입 및 임대지원 조항 신설(안 제15조)
- 마.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의무 명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 제9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0조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 제9조의2

나. 예산 조치: '17년도 예산 980,736천원 기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조례현황
 - (가) 경상남도 시·군 조례: 19건
 - (나) 도 조례에 따라 개정한 시·군: 7곳(양산시, 거제시,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
 - (다) 도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중인 시·군: 1곳(창녕군)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 나. 증설 투자비 지원 신설 및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외국인 투자지원 보다 앞에 기술하여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015.4.0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R&D센터”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2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공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본점의 도내 이전 지원) 도지사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임대용지 공급)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업종 및 R&D센터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등) ①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서울본부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용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기금의 집행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산업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8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시·군 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것. 단, 증

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함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아니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

제9조의2 (용자요건 및 지원기준) ① 규칙 제16조제2항의 지역에 따른 차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충족을 하여야 한다.

[별표1] (제9조의 2 관련)

기금 용자 지역별 지원 기준

구 분	시·군명	지원대상(투자액/고용)	지 원 기 준
A지역	창원, 김해, 양산	150억원, 100명 이상	부지매입비 30%
B지역	진주, 통영, 사천 거제, 함안	100억원, 50명 이상	부지매입비 40%
C지역	밀양, 창녕, 고성	70억원, 40명이상	부지매입비 50%
D지역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50억원, 30명 이상	부지매입비 60%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재기재하여 발생하는 법령 불부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조항 정비함(안 제명, 제1조)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근거: 법 제6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위임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제명 및 목적조항에서 관련

내용 삭제함

나. 위원회 구성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안 제2조)

- 법령개정사항(위원장이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촉위원 중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 위촉위원 임기규정 신설) 미반영으로 법령불부합하여 삭제

다. 위원회 기능관련 법령 재기재사항 삭제함(현행 제4조)

- 법령 개정사항(관련 업체가 구매가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과징금에 관한 사항) 미반영,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문” 기능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불부합하여 삭제

라. 영 제109조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안 제2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 간사, 회의, 심의요청,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 거창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 ~ 11.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2조제1항 위촉위원 성별고려 사항)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13곳):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입법예고 중(5곳): 경상남도,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 나. 조례 제명 정비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의 재기재 및 확인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4호, 2016.5.29., 일부개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 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타법개정]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제60조제2항 개정 전]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2016.1.15. 개정 전 위원장 임기규정]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⑥ 삭제 <2016.1.15.> ↓

<삭제 전 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16.7.12.시행)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16.7.12.) 내용 반영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익계약 대부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 삭제(안 제23조)
 - 근거 : 조례 위임근거인 영 제29조제1항제7호 삭제됨
 -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30조제6항)
 -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이내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함
 -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납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삭제(안 제28조제2항제4항, 제35조제3항, 제81조제1항,

제81조의2)

- 이유: 분납 이자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 근거: 영 제32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위임행정규칙) 제정 사항 반영 (안 제34조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사항 신설

다.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정비함(안 제12조, 제75조, 제82조제2항)

- 매각대금 등의 사용,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은닉 공유재산 신고자 보상관련
- 근거: 영 제10조, 제84조제3항, 제90조

라. 감정평가의뢰대상 확대(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안 제71조, 제83조)

- (현행)감정평가법인 ⇒ (개정)감정평가업자
- 영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개정으로 일반재산 매각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마. 그 밖에 인용 법령 및 조문 등을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9조, 제81조,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자부 고시)」 (위임행정규칙) 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 ~ 11. 2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2곳): 고성군, 하동군

○ 입법예고 중(5곳): 창원시, 양산시, 진주시, 함양군, 남해군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 하였으며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익계약 대부와, 사도 개설자에 대한 해당 공유지의 수익계약 가능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6호, 2016.5.29., 일부개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0.8.4., 2016.7.12.>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결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16.7.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7.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8.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 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7.7., 2016.7.12.>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

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2016.7.12.>
- ③ 삭제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 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54호, 2016.1.27., 일부개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

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2016.1.27.>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11.>
 -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12.1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406호, 2016.7.28., 일부개정]

-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1., 2016.7.28.>
-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6.11.>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11.>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⑥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14.10.15., 2015.4.20., 2016.7.28.>

1. 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6항제1호나목의 사업
 -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 3) 제6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⑧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⑨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6.11.>

⑩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⑪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7.28.>

⑬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8항 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⑭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6.7.28.>

[전문개정 2009.7.30.]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6.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3호, 2016.6.8., 일부개정]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5., 2012.10.26.>

③ 삭제 <2011.1.5.>

④ 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11.27.>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⑤ 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제목개정 2007.7.2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0.4.12.]

□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6.8.3]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0호, 2016.8.3, 제정]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영 제38조제1항제3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 시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⑥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추가 지원대상인 전상·순직·공상군인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제7호 ~ 제9호)
- 나. 명예수당 지급대상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 참전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직군인의 유족: 월 3만원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17년도 예산 36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0. 31. ~ 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다른 지자체 현황 : 창녕군, 산청군, 양산시, 고령군, 봉화군,
군위군 등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와 전상·공상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순국군인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 [법률 제1369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 18.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 ⑥ (생략)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23.] [법률 제142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22.]

□ 「**지방재정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1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견 11-0015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1. 3. 28.
안건명	통영시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				

• 질의요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 의견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이하 “참전유공자조례”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3조(지원대상) 중 지원제외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종전의 지원제외 대상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법상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조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권자나 지원금액이 상이한 점, 참전유공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법상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규정(제6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참전유공자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그 명칭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수당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의 경우 모두 국가(국가보훈처)의 예산으로 지급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에도 해당하여 둘 이상의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을 중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바,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중지급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도로 참전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로이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의 수단으로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라는 정책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가의 사업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므로 국가 사업의 취지는 참고하되 국가 사업과 동일한 정책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는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목적 또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조례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사망위로금 지급, 장례비용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참전유공자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자가 되면 참전명예수당 이외의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되므로 이는 이들을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3. 주요내용

- 가.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 허용 기준에 대한 조례위임사항 신설함(안 제11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0. 24. ~ 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개정 현황

개정(3)	입법예고 등(9)	미개정(5)
김해시, 사천시, 고성군	창원시,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밀양시, 진주시, 합천군, 창녕군, 의령군,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나.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미취사 객실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위임사항으로서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8호, 2016.2.3., 일부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별표 1] <개정 2016. 6. 30.>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 2. (생략)

3.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 라. (생략)

~ 이하 생략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타법개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2.6.]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조례로 다시 정의하지 않아야 한다.>

안건번호	의 15-0136	견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5. 6. 16.
안건명	강남구 - 조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 등 관련)				
<p>• 질의요지</p> <p>가.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제9호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가목),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나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4조에서 “지정금고” 및 “금융기관”을 각각 「지방재정법」 제77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p> <p>• 회답</p> <p>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목),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이하 “재난안전관리 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가목),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 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p>					

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에서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 나목에서 ‘... 등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과 상이한바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위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나목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하 생략 ~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제안이유

- (주)토디팜코리아는 향산화 능력이 뛰어난 해죽순으로 쌀, 국수 등 관련 상품을 제조·판매할 예정으로, 해죽순 채취 독점권 및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투자규모, 고용인원, 지역 쌀 우선구매와 쌀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향후 거창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상기업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기업체 현황

- 기 업 명 : (주)토디팜코리아
- 생 산 품 : 해죽순쌀, 즉석국수, 삼일천하, 해죽순차 등 27여종
- 투자계획
 - 위 치 : 승강기전문농공단지
 - 투자내용 : 500억원 정도 / 200명 정도

나. 보조금 지원대상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

다. 지원계획

- 입지보조금 지원

지 원 조 건	지 원 방 안	비고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상시고용 300명 이상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대상	입지보조금 70% 지원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승강기기업에 대한 보조지원과 동일수준으로 지원)	

※ 기타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은 지원범위에 따라 지급

- 지원시기 : 2018년 (신규고용 다음연도 신청, 투자이행 후 지원)

라. 소요예산(안)

- 입지보조금 지원 : 70% [단위 : 억원]

구 분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입지 보조금 (66,000m ²)	79.9	8.0	47.9	24.0

※ 분양금액 m²당 121천원(평당 400천원)

※ 산 출 식

- 입지보조금 : 분양가의 70% 지원

$$66,000\text{m}^2 \times 121,000\text{원} \times 70\% = 5,590,200,000\text{원} = \underline{55.9\text{억 원}}$$

4. 참고사항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8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제8조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8조 ~ 20조, 제22조

5. 검토의견

- 가. 해죽순산업 공장은 동남아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해죽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혼합하여 제조되는 해죽순쌀, 국수 등 먹거리 품목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 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다. 본 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제조하여 지역쌀 우선구매와 쌀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에 큰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라. 거창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발전 시 거창군 이미지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마. 투자유치 시 보조금 지원 후 사업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 상환 등 사후조치가 적극 필요한 사항으로
- 라.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공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별 공장 입지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가능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

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 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8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 12조 (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 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도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 19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 ①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11. 25.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지매입)

가.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1) 제안사유

- 용도폐지된 국도37호선의 효율적인 재활용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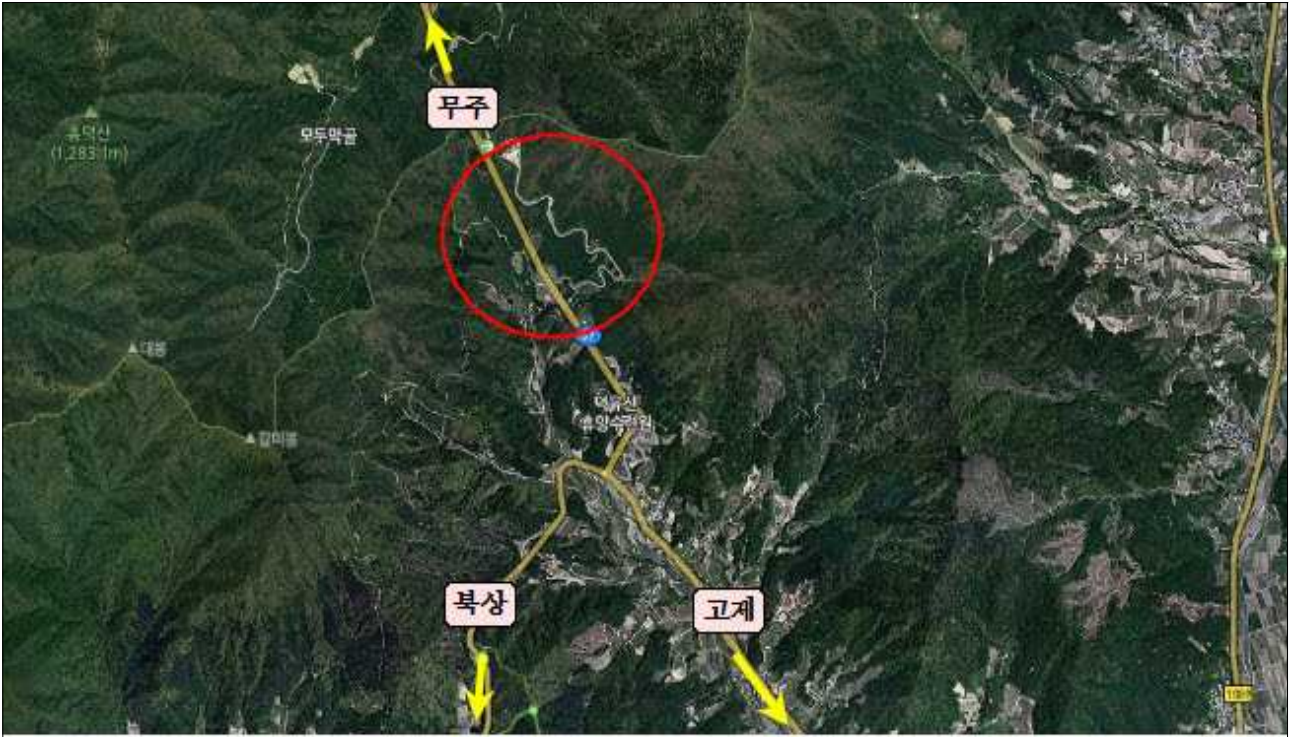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8년 12월
- 사 업 비 : 11,700백만원(국비 5,850, 도비 1,755, 군비 4,095)
- 주요기능 : 봅슬레이 1.7km, 모노레일 2.5km, 숲 체험시설 등

3) 취득재산의 표시

-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 대지면적 : 45,589m²
- 매입목적 :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사업

4) 취득재산 위치

□ 위치도 :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 현황사진 :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 조감도 : 고제면 개명리 2024외 64필지



나.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1) 제안사유

-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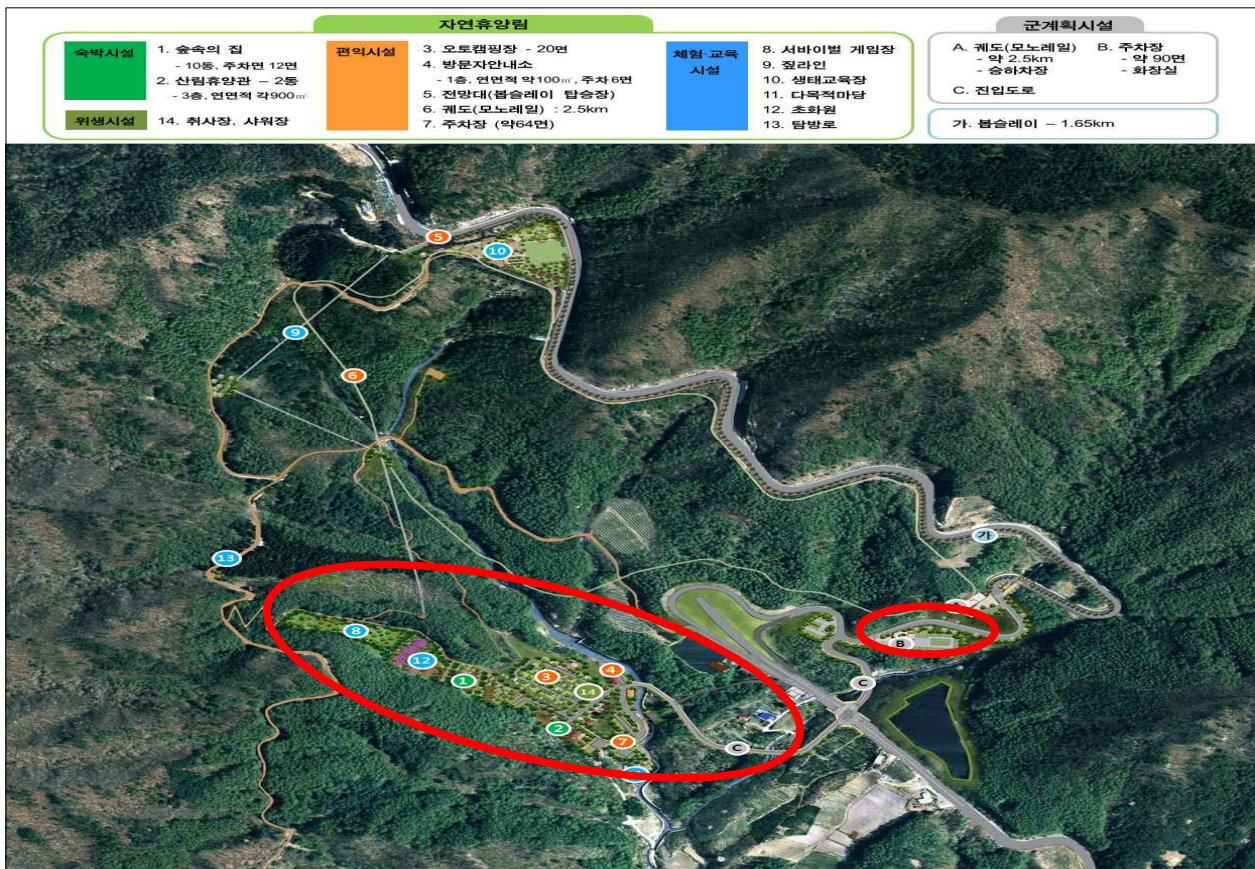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 사업비 : 9,900백만원(국비 4,950, 도비 1,485, 군비 3,465)
- 주요기능 : 덕유산권 핵심관광 타운

3) 취득재산의 표시

-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36-1외 10필지
- 대지면적 : 26,463m²
- 건축규모 : 791.6m²

4) 취득재산 위치

□ 위치도 및 조감도 : 고제면 개명리 2036-1 외 10필지



다.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1) 제안사유

-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토지취득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0월
- 사업비 : 1,900백만원(국비 800, 도비 240, 군비 860)
- 주요기능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무실 및 농기계 보관창고

3) 취득재산의 표시

- 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190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3,438㎡
- 건축규모 : 886㎡ (1층)

4) 취득재산 위치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천면 장거리 190번지 외 1필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검토의견

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사업,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수승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은
 - 무주 ~ 고제간 터널 완료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도37호선의 일부구간을 재활용을 통해 남부백두대간권 핵심산악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무주스키장 등을 연계한 외부관광객의 효과적 유치와 주민일자리 창출·소득증대 전망

- 거함산 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 백두대간 폐도(국도 37호선) 주변 생태복원과 체험단지 조성으로 지역자원 활용과 무주스키장 등을 연계한 외부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증대
-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조성사업은
 -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과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율 제고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다. 사업의 중요성 및 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 검토

□ 현황

- 기업명 : (주)토디팜코리아
- 생산품 : 해죽순쌀, 즉석국수, 해죽순차, 비누 등
- 위 치 : 승강기전문농공단지
- 면 적 : 66,000m²
-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 500억 정도, 200명 정도

□ 투자와 관련 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 경상남도지사는 도외 소재 공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시장·군수 협의)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 대상지역 지원]
 - ①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 ②항 ①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입지보조금]
 - ②항 ①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이상 경영 의무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②항 2호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6-87] 개정

- 제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②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7조에서 10조 까지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점

- 투자유치 계약 시 지역쌀 우선 사용 한다고 하나 기업이윤 등에 따라 단가가 낮은 타지역 쌀 사용 할 수도 있음
- 고용인원이 200명 된다 하나 기술인력을 제외하면 지역의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이 될지 의문사항 임